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85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정연욱 · 이성권 · 이종배
이헌승 · 신성범 · 한지아
진종오 · 박정하 · 조경태
박정훈 · 서명옥 · 김재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복권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한편, 사행산업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서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복권의 발매·구매대행 행위 등의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부재하여 복권 유사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유사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③ (생 략)	<u>제5조의3(유사행위의 금지 등) 누</u> <u>구든지 국내 · 외에서 발행되는</u> <u>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u> <u>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u> <u>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u> <u>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u> <u>니 된다.</u> 제34조(벌칙) ① ----- -----7년 -----7천만원-----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5조의3을 위반하여 복권의</u> <u>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u> <u>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u> <u>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u> <u>공하는 행위를 한 자</u> ② · ③ (현행과 같음)